|  |  |  |
| --- | --- | --- |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4호《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을 2010년 7월 22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 장2011년 9월 13일**제1장 총 칙****제1조**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및 그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출입 식품의 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에 준용한다. 수출입 식품첨가제, 식품과 관련한 제품, 과일, 식용 동물의 안전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업체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나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은 감독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입 식품에 대해서는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입 식품의 생산자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출입 식품의 생산자와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책임을 짐으로써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신의 성실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검사검역기구의 인원(이하 검사검역요원이라 함)은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직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제2장 식품 수입****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과 식품 안전상황을 평가하며, 동시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요구에 따라 소급심사를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 국가의 식품안전표준 요구, 국내외 전염병 발생상황과 유독유해 물질의 리스크분석결과, 그리고 전항에서 규정한 평가와 심사결과에 결부시켜 상응하는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한다. **제8조** 수입식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검사검역 관련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포하기 전에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 위생표준, 식품 품질기준, 식품관련 업계표준의 강제성 집행표준에 따라 검사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검사검역기구에 국무원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보건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제**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업무는 국가질검총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비안(備案)신고를 하는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비안(備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 비안(備案) 명부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수속이 필요한 수입식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제11조** 동식물 전염병 유발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지정세관과 조건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2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지참하고 통관지 세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명세서, 선하증건 등 필요한 증빙서류(2) 관련 허가서류(3) 법률법규, 쌍무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국(지역) 정부의 검역(위생) 증명서(4)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은 수입식품 라벨의 샘플과 그 번역문을 제출(5)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증명서 제출(6) 수입식품에 필요한 기타 증서나 증명서류. 검사신고 시에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수입식품의 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로트번호),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가 제출한 검사신고 자료를 확인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14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운송수단은 위생 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예비포장 식품의 중문라벨, 중문설명서는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내용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품질관련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심사하고 양식판면 검사와 라벨 내용도 검사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수상, 증서취득, 생산지역 및 기타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을 강조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 합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또는 인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검사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이동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에 합격된 후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취득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하는 합격증명서에는 화물의 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로트번호)를 일일이 밝혀야 하며, 브랜드나 사양이 없는 경우에는〝무〞라고 밝혀야 한다.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소각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반품처분 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업체가 반품수속을 하도록 한다. 여타 항목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적 처리를 하고 재검사에 합격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제19제**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비안(備案)신고를 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정확하고 완비한 수입업체 비안(備案)신청서 (2)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서,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서,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서 등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을 제시 (3) 기업의 품질안전제도(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 부문의 기능과 직위직책 (5) 경영식품의 종류, 보관 장소(6) 최근 2년간 식품의 수입, 가공 또는 판매에 종사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식품의 종류와 수량) (7) 스스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신고업체 비안(備案)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심사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제공한 정보를 확인한 후 비안(備案) 처리를 한다. **제20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는 식품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일련번호, 품명, 사양,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품질보장기간,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방법, 납품일자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검사검역기구는 본 관할구역 내 수입업체의 수입, 판매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제2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연도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결과에 의거하여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22조** 수입한 식품원료를 전부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목적지 국가(지역)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또는 무역계약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한다. **제23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요구에 위배되는 수입식품을 발견한 경우 법정요구에 위배되는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검사신고인, 대리인을 불량기록명부에 넣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부에 넣어 대외에 공포한다. **제3장 식품 수출****제24조** 수출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에 관련표준이 없고 계약서에도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수출식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완벽한 품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보조재, 식품첨가제, 포장재, 용기 등의 구입 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생산기록서류 보관제도를 수립하고 식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상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출하 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구에 따라 그 수출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검사신고를 할 수 있다.상기 기록들은 진실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2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비안(備案)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관할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품질안전 관리시스템 운행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비안(備案)수속을 해야 한다.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는 원료목록(이하 목록이라 함)과 비안(備案)조건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수출식품 원료목록에 든 원료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는 재배, 양식장의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국가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비안(備案)한 원료 재배, 양식장 명부를 공포한다. **제29조**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을 감독, 검사하고 비안(備案)요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정부 관련 주관부서와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재배, 양식장에서 제공하는 원료의 안전, 위생상황을 지체 없이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재배, 양식장은 원료생산 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생산기록은 진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록은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을 한 재배, 양식장은 수입국(지역)의 식품안전표준과 중국 관련규정에 따라 화학투입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전염병 발병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을 한 재배, 양식장은 그가 생산한 매회 원료에 수출식품 가공원료 납품증명문건을 발급해야 한다. **제3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본 지역 내 수출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한 리스크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출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 관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32조** 수출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명세서, 출하 합격증명서, 수출식품 가공원료 납품증명문건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검사신고 시에는 수출식품의 품명,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3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식품 분류별 관리요구, 본 지역의 수출식품 품종, 이왕의 수출상황, 안전기록 및 수입국(지역)의 요구 등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분석을 토대로 하여 본 관할지역 수출식품의 샘플링 검사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샘플링 검사방안과 상응하는 작업규범, 절차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쌍무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제34조** 수출요구에 부합하는 수출식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시에는 증서를 발급한다. 수출식품 수입국(지역)에서 증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허가를 받고 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수출식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에 따라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처리를 하여 합격된 후 수출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하여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못한다. **제35조**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은 위생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제36조** 쉽게 변질하는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창,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의 운송인, 적하단위나 그 대리인은 운송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여 정결, 위생, 냉장, 밀폐 등 적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운송하지 못한다. **제37조** 수출식품의 생산업체는 운송포장에 생산업체 명칭, 등록번호, 품명, 생산 일련번호와 생산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그가 발급한 증서에 전술한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이나 계약서에 특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소급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직속 검사검역국의 동의를 얻고 기재내용을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검사검역 표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 **제38조** 수출식품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을 받고 수출요구에 부합하여 세관으로 운송하는 경우 산지 검사검역기구는 선적감시, 봉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수출식품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을 거쳐 수출요구에 부합한 경우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못한다.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산지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원인에 따라 상응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0조** 세관 검사검역기구가 법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생산경영업체를 불량기업명부에 기록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관련업체를 불법기업명부에 기록하고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 **제4장 리스크 조기경보 및 관련조치****제4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식품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 식품에서 엄중한 식품 안전문제나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그리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 식품안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2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정보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정보(2) 업계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출입 식품 안전정보 (3) 국제기구나 해외 정부기구에서 반포한 식품 안전정보와 리스크 조기경보 및 해외 업계협회 등 조직이나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정보(4) 기타 식품 안전정보. **제43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안전정보를 확인, 정리하여 규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한 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리스크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정보의 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제45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식품 안전정보의 리스크등급에 의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를 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상황에 따라 리스크 조기통고를 하고 아래의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엄밀한 감시, 검사보강, 리콜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수출입 제한(2) 수출입 금지, 현지 소각 또는 반품처리 (3) 수출입 식품안전 응급 예비조치 가동.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 및 통제조치를 조직 실시한다. **제46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불확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나 조기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체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고 리스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47조** 수출입 식품안전 리스크가 이미 해소되었거나 접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리스크 조기경보와 조기통고 및 통제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48조**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주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스스로 리콜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포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판매를 중지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사용을 중지하게 해야 하며, 식품 리콜상황을 열심히 기록해야 한다. 보고를 입수한 검사검역기구는 사실을 규명하고 식품의 영향범위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수입업체가 문제 식품을 스스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에게 리콜명령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국가질검총총국에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리스크 조기경보를 하거나 조기통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조치 및 기타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한 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수출식품의 생산 경영업체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발생을 피면하거나 감소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 수행(2) 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봉인, 차압 (3)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불법 사용한 원료, 보조제, 첨가제, 농업투입물 및 불법 생산에 사용한 수단, 설비를 봉인, 차압(4)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화근이 존재하는 영업장소를 봉인. **제51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통제조치를 취한 후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정보 및 그가 취한 통제조치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법률 책임****제52조** 이 방법 제17조의 지정장소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검사를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판매,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수입업체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수입,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식품 수입, 판매 기록에 수입식품의 위생증서 일련번호, 품명, 사양,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품질보장기간,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방법, 인도일자 등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3) 식품 수입, 판매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55조**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장에 아래의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 과정에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 화학투입물을 사용한 경우(2) 관련기록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최소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수출식품 생산업체가 수출식품 생산에 사용한 원료가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수속을 처리한 기지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독을 받지 않고 샘플링검사에 불합격인 식품을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2)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샘플링검사를 받고 검사검역 증명서를 받은 식품을 제멋대로 바꾼 경우. **제57조** 수출입 식품 생산업체, 검사검역기구 및 검사검역요원이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제58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업체에는 수출입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입업체, 그 대리업체를 포함한다. **제59조** 수출입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및 국경지역의 소액거래 무역시장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속달, 우편, 관광객 휴대방식에 의한 수출입식품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1조** 샘플, 선물, 증여, 전시품 등 비 무역식품의 수출입, 면세경영에 사용하거나 대사(영사)관 자가용 식품의 수입, 대사(영사)관, 외국 주재 중국기업 임직원 등의 자가용 식품의 수출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 제공하는 식품은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4조** 이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4号《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已经2010年7月22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3月1日起施行。 局 长 二〇一一年九月十三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证进出口食品安全，保护人类、动植物生命和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以下简称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和《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进出口食品的检验检疫及监督管理。 进出口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水果、食用活动物的安全管理依照有关规定执行。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在国家质检总局的统一领导下，依法做好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第四条**　国家质检总局对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实施注册管理，对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出口商或者代理商实施备案管理，对进口食品实施检验，对出口食品生产企业实施备案管理，对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场实施备案管理，对出口食品实施监督、抽检，对进出口食品实施分类管理、对进出口食品生产经营者实施诚信管理。 **第五条**　进出口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法从事生产经营活动，对社会和公众负责，保证食品安全，诚实守信，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六条**　检验检疫机构从事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的人员（以下简称检验检疫人员）应当具有相关的专业知识，尽职尽责。 **第二章　食品进口** **第七条**　国家质检总局依据中国法律法规规定对向中国出口食品的国家或者地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和食品安全状况进行评估，并根据进口食品安全监督管理需要进行回顾性审查。 国家质检总局依据中国法律法规规定、食品安全国家标准要求、国内外疫情疫病和有毒有害物质风险分析结果，结合前款规定的评估和审查结果，确定相应的检验检疫要求。**第八条**　进口食品应当符合中国食品安全国家标准和相关检验检疫要求。食品安全国家标准公布前，按照现行食用农产品质量安全标准、食品卫生标准、食品质量标准和有关食品的行业标准中强制执行的标准实施检验。 首次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进口商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交国务院卫生行政部门出具的许可证明文件，检验检疫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要求进行检验。 **第九条**　国家质检总局对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食品生产企业实施注册制度，注册工作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执行。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向国家质检总局备案。申请备案的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按照备案要求提供企业备案信息，并对信息的真实性负责。 注册和备案名单应当在总局网站公布。 **第十条**　进口食品需要办理进境动植物检疫审批手续的，应当取得《中华人民共和国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后方可进口。 **第十一条**　对进口可能存在动植物疫情疫病或者有毒有害物质的高风险食品实行指定口岸入境。指定口岸条件及名录由国家质检总局制定并公布。 **第十二条**　进口食品的进口商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规定，持下列材料向海关报关地的检验检疫机构报检： （一）合同、发票、装箱单、提单等必要的凭证； （二）相关批准文件； （三）法律法规、双边协定、议定书以及其他规定要求提交的输出国家（地区）官方检疫（卫生）证书； （四）首次进口预包装食品，应当提供进口食品标签样张和翻译件； （五）首次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应当提供本办法第八条规定的许可证明文件； （六）进口食品应当随附的其他证书或者证明文件。 报检时，进口商或者其代理人应当将所进口的食品按照品名、品牌、原产国（地区）、规格、数/重量、总值、生产日期（批号）及国家质检总局规定的其他内容逐一申报。 **第十三条**　检验检疫机构对进口商或者其代理人提交的报检材料进行审核，符合要求的，受理报检。 **第十四条**　进口食品的包装和运输工具应当符合安全卫生要求。 **第十五条**　进口预包装食品的中文标签、中文说明书应当符合中国法律法规的规定和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 **第十六条**　检验检疫机构应当对标签内容是否符合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要求以及与质量有关内容的真实性、准确性进行检验，包括格式版面检验和标签标注内容的符合性检测。 进口食品标签、说明书中强调获奖、获证、产区及其他内容的，或者强调含有特殊成分的，应当提供相应证明材料。 **第十七条**　进口食品在取得检验检疫合格证明之前，应当存放在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监管场所，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动用。 **第十八条**　进口食品经检验检疫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出具合格证明，准予销售、使用。检验检疫机构出具的合格证明应当逐一列明货物品名、品牌、原产国（地区）、规格、数/重量、生产日期（批号），没有品牌、规格的，应当标明“无”。 进口食品经检验检疫不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出具不合格证明。涉及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不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当事人销毁，或者出具退货处理通知单，由进口商办理退运手续。其它项目不合格的，可以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合格后，方可销售、使用。**第十九条**　检验检疫机构对进口食品的进口商实施备案管理。进口商应当事先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并提供以下材料： （一）填制准确完备的进口商备案申请表； （二）工商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书、法定代表人身份证明、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等的复印件并交验正本； （三）企业质量安全管理制度； （四）与食品安全相关的组织机构设置、部门职能和岗位职责； （五）拟经营的食品种类、存放地点；（六）2年内曾从事食品进口、加工和销售的，应当提供相关说明（食品品种、数量）； （七）自理报检的，应当提供自理报检单位备案登记证明书复印件并交验正本。 检验检疫机构核实企业提供的信息后，准予备案。 **第二十条**　进口食品的进口商应当建立食品进口和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进口食品的卫生证书编号、品名、规格、数量、生产日期（批号）、保质期、出口商和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容。记录应当真实，保存期限不得少于2年。 检验检疫机构应当对本辖区内进口商的进口和销售记录进行检查。　　 **第二十一条**　国家质检总局对进口食品安全实行风险监测制度，组织制定和实施年度进口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 检验检疫机构根据国家质检总局进口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组织对进口食品进行风险监测，上报结果。 检验检疫机构应当根据进口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在风险分析的基础上调整对相关进口食品的检验检疫和监管措施。 **第二十二条**　进口食品原料全部用于加工后复出口的，检验检疫机构按照出口食品目的国（地区）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或者贸易合同要求进行检验。 **第二十三条**　检验检疫机构发现不符合法定要求的进口食品时，可以将不符合法定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和出口商、国内进口商、报检人、代理人列入不良记录名单；对有违法行为并受到行政处罚的，可以将其列入违法企业名单并对外公布。**第三章 食品出口** **第二十四条**　出口食品生产经营者应当保证其出口食品符合进口国家（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 进口国家（地区）无相关标准且合同未有要求的，应当保证出口食品符合中国食品安全国家标准。 **第二十五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完善的质量安全管理体系。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原料、辅料、食品添加剂、包装材料容器等进货查验记录制度。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生产记录档案，如实记录食品生产过程的安全管理情况。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出厂检验记录制度，依照本办法规定的要求对其出口食品进行检验，检验合格后方可报检。　 上述记录应当真实，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二十六条**　国家质检总局对出口食品生产企业实施备案制度，备案工作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执行。 **第二十七条**　检验检疫机构负责对辖区内出口食品生产企业质量安全管理体系运行情况进行监督管理。　 **第二十八条**　国家质检总局对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场实施备案管理。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场应当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办理备案手续。 实施备案管理的原料品种目录（以下称目录）和备案条件由国家质检总局另行制定。出口食品的原料列入目录的，应当来自备案的种植、养殖场。 国家质检总局统一公布备案的原料种植、养殖场名单。 **第二十九条**　备案种植、养殖场所在地检验检疫机构对备案种植、养殖场实施监督、检查，对达不到备案要求的，及时向所在地政府相关主管部门、出口食品生产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通报。 生产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向备案种植、养殖场所在地检验检疫机构通报种植、养殖场提供原料的质量安全和卫生情况。 **第三十条**　种植、养殖场应当建立原料的生产记录制度，生产记录应当真实，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备案种植、养殖场应当依照进口国家（地区）食品安全标准和中国有关规定使用农业化学投入品，并建立疫情疫病监测制度。备案种植、养殖场应当为其生产的每一批原料出具出口食品加工原料供货证明文件。　 **第三十一条**　国家质检总局对出口食品安全实施风险监测制度，组织制定和实施年度出口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 检验检疫机构根据国家质检总局出口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组织对本辖区内出口食品实施监测，上报结果。 检验检疫机构应当根据出口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在风险分析基础上调整对相关出口食品的检验检疫和监管措施。 **第三十二条**　出口食品的出口商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规定，持合同、发票、装箱单、出厂合格证明、出口食品加工原料供货证明文件等必要的凭证和相关批准文件向出口食品生产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检。报检时，应当将所出口的食品按照品名、规格、数/重量、生产日期逐一申报。 **第三十三条**　直属检验检疫局根据出口食品分类管理要求、本地出口食品品种、以往出口情况、安全记录和进口国家（地区）要求等相关信息，通过风险分析制定本辖区出口食品抽检方案。 检验检疫机构按照抽检方案和相应的工作规范、规程以及有关要求对出口食品实施抽检。 有双边协定的，按照其要求对出口食品实施抽检。 **第三十四条**　出口食品符合出口要求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规定出具通关证明，并根据需要出具证书。出口食品进口国家(地区)对证书形式和内容有新要求的，经国家质检总局批准后，检验检疫机构方可对证书进行变更。 出口食品经检验检疫不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出具不合格证明。依法可以进行技术处理的，应当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合格后方准出口；依法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经技术处理后仍不合格的，不准出口。 **第三十五条**　出口食品的包装和运输方式应当符合安全卫生要求，并经检验检疫合格。　 **第三十六条**　对装运出口易腐烂变质食品、冷冻食品的集装箱、船舱、飞机、车辆等运载工具，承运人、装箱单位或者其代理人应当在装运前向检验检疫机构申请清洁、卫生、冷藏、密固等适载检验；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不准装运。 **第三十七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在运输包装上注明生产企业名称、备案号、产品品名、生产批号和生产日期。检验检疫机构应当在出具的证单中注明上述信息。进口国家（地区）或者合同有特殊要求的，在保证产品可追溯的前提下，经直属检验检疫局同意，标注内容可以适当调整。 需要加施检验检疫标志的，按照国家质检总局规定加施。 **第三十八条**　出口食品经产地检验检疫机构检验检疫符合出口要求运往口岸的，产地检验检疫机构可以采取监视装载、加施封识或者其他方式实施监督管理。 **第三十九条**　出口食品经产地检验检疫机构检验检疫符合出口要求的，口岸检验检疫机构按照规定实施抽查，口岸抽查不合格的，不得出口。 口岸检验检疫机构应当将有关信息及时通报产地检验检疫机构，并按照规定上报。产地检验检疫机构应当根据不合格原因采取相应监管措施。 **第四十条**　检验检疫机构发现不符合法定要求的出口食品时，可以将其生产经营者列入不良记录名单；对有违法行为并受到行政处罚的，可以将其列入违法企业名单并对外公布。　**第四章 风险预警及相关措施** **第四十一条**　国家质检总局对进出口食品实施风险预警制度。 进出口食品中发现严重食品安全问题或者疫情的，以及境内外发生食品安全事件或者疫情可能影响到进出口食品安全的，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采取风险预警及控制措施。 **第四十二条**　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机构应当建立进出口食品安全信息收集网络，收集和整理食品安全信息，主要包括： （一）检验检疫机构对进出口食品实施检验检疫发现的食品安全信息； （二）行业协会、消费者反映的进口食品安全信息； （三）国际组织、境外政府机构发布的食品安全信息、风险预警信息，以及境外行业协会等组织、消费者反映的食品安全信息； （四）其他食品安全信息。 **第四十三条**　检验检疫机构对经核准、整理的食品安全信息，按照规定的要求和程序向国家质检总局报告并向地方政府、有关部门通报。 **第四十四条**　国家质检总局和直属检验检疫局按照相关规定对收集到的食品安全信息进行风险分析研判，确定风险信息级别。 **第四十五条**　国家质检总局和直属检验检疫局应当根据食品安全风险信息的级别发布风险预警通报。国家质检总局视情况可以发布风险预警通告，并决定采取以下控制措施： （一）有条件地限制进出口，包括严密监控、加严检验、责令召回等； （二）禁止进出口，就地销毁或者作退运处理； （三）启动进出口食品安全应急处置预案。 检验检疫机构负责组织实施风险预警及控制措施。 **第四十六条**　国家质检总局可以参照国际通行做法，对不确定的风险直接发布风险预警通报或者风险预警通告，并采取本办法第四十五条规定的控制措施。同时及时收集和补充有关信息和资料，进行风险分析。 **第四十七条**　进出口食品安全风险已不存在或者已降低到可接受的程度时，应当及时解除风险预警通报和风险预警通告及控制措施。 **第四十八条**　进口食品存在安全问题，已经或者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进口食品进口商应当主动召回并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进口食品进口商应当向社会公布有关信息，通知销售者停止销售，告知消费者停止使用，做好召回食品情况记录。 检验检疫机构接到报告后应当组织核查，根据产品影响范围按照规定上报。 进口食品进口商不主动实施召回的，由直属检验检疫局向其发出责令召回通知书并报告国家质检总局。必要时，国家质检总局可以责令其召回。国家质检总局可以发布风险预警通报或者风险预警通告，并采取本办法第四十五条规定的措施以及其他避免危害发生的措施。 **第四十九条**　发现出口的食品存在安全问题，已经或者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出口食品生产经营者应当采取措施，避免和减少损害的发生，并立即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 **第五十条**　检验检疫机构在依法履行进出口食品检验检疫监督管理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二）查阅、复制、查封、扣押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查封、扣押不符合法定要求的产品，违法使用的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以及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 （四）查封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重大隐患的生产经营场所。 **第五十一条**　检验检疫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将采取的控制措施向国家质检总局报告并向地方政府、有关部门通报。 国家质检总局按照有关规定将相关食品安全信息及采取的控制措施向有关部门通报。**第五章　法律责任** **第五十二条**　违反本办法第十七条指定场所监管相关规定，没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下罚款。 **第五十三条**　销售、使用经检验不符合食品安全国家标准的进口食品，由检验检疫机构按照食品安全法第八十九条、第八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第五十四条**　进口商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食品安全法第八十九条、八十七条的规定给予处罚： （一）未建立食品进口和销售记录制度的； （二）建立的食品进口和销售记录没有如实记录进口食品的卫生证书编号、品名、规格、数量、生产日期（批号）、保质期、出口商和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容的； （三）建立的食品进口和销售记录保存期限少于2年的。 **第五十五条**　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场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处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罚款： （一）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过程中违规使用农业化学投入品的； （二）相关记录不真实或者保存期限少于2年的。 出口食品生产企业生产出口食品使用的原料未按照规定来自备案基地的，按照前款规定给予处罚。 **第五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食品安全法第八十九条、第八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一）未报检或者未经监督、抽检合格擅自出口的； （二）擅自调换经检验检疫机构监督、抽检并已出具检验检疫证明的出口食品的。 **第五十七条**　进出口食品生产经营者、检验检疫机构及检验检疫人员有其他违法行为的，按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处理。**第六章　附 则** **第五十八条**　进出口食品生产经营者包括进出口食品的生产企业、进出口商和代理商。 **第五十九条**　进出海关特殊监管区域的食品以及边境小额和互市贸易进出口食品的检验检疫监督管理，按照国家质检总局有关规定办理。 **第六十条**　以快件、邮寄和旅客携带方式进出口食品的，应当符合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第六十一条**　进出口用作样品、礼品、赠品、展示品等非贸易性的食品，进口用作免税经营的、使领馆自用的食品，出口用作使领馆、中国企业驻外人员等自用的食品，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六十二条**　供香港、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食品，国家有另行规定的，从其规定。 **第六十三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六十四条**　本办法自2012年3月1日起施行。 |